

동성애와 유엔

유엔과 인권



그리고
동성애

1. 국제환경의 변화와 인권규범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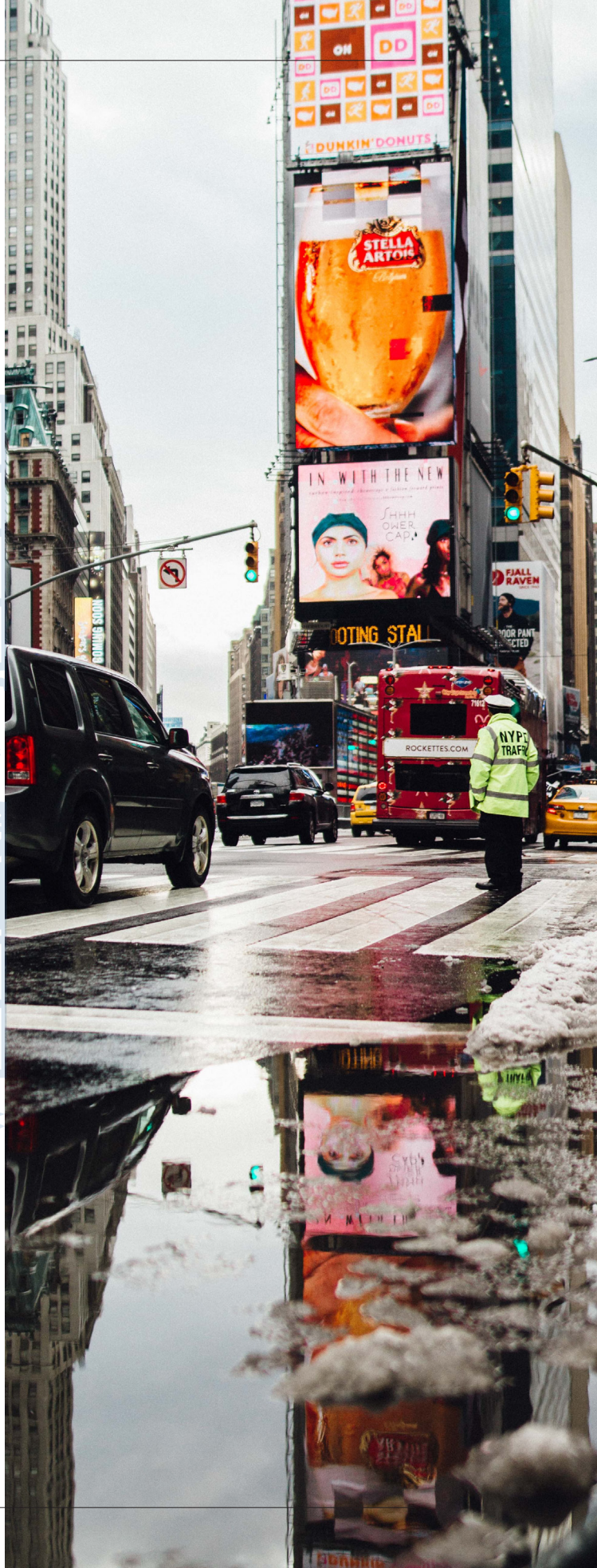
(1) 20세기 중반: 국제 인권규범 생성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규모 인명살상, 나치정권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종전 후 전승국을 중심으로 주동자에 대한 사법(司法)적 정의 실현과 보편적 인권 규범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독일 뉘른베르크의 국제군사재판, 일본 도쿄의 국제군사재판을 통해 재판 전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전 이미 창설되었던 UN(United Nations) 헌장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하며 UN이 주도한 결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탄생되었다. 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세계대전 중 참혹했던 인권유린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인권의 국제법규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국제법상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선언을 기반으로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규범력을 가지는 상당수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협약이 생겨나고 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의 문구를 포함하게 되면서 국제인권법 형성에 기여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의 의견 대립은 50년대를 지나 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나, 1966년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인권의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이하 사회권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을 채택하였고, 이 조약들은 1976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특정한 주제에 대해 중점을 둔 국제인권협약들이 체결되었는데, 집단학살방지협약¹⁹⁴⁸, 인권규범을 중심으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¹⁹⁶⁶,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¹⁹⁷⁹ 고문방지협약¹⁹⁸⁴, 아동권리협약¹⁹⁸⁹ 등이 제정, 시행되었다. 현재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 가입한 국가들의 수는 100개국을 훌쩍 넘는다.

(2) 탈냉전시대의 인권의 변모

1990년 초반을 전후한 소련(Soviet Union)의 붕괴, 동구권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국제정치사에서 냉전체제의 종식을 가져왔고, 개인의 인권을 보다 잘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과 이를 채택, 운영해 온 서방국가들의 도덕적 우월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화를 도모하는 동구권의 구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확산시키는 도덕적 힘을 국제사회에서 얻게 된 것이었다.¹⁾ 인권이 전세계적 운동으로 승화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인권에 대한 서방국가들과 사회주의국가들의 갈등이 약화되자 UN은 인권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종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가려졌던 이슈를 갖고 논의하게 되었는데,²⁾ 소외된 부류였던 아동, 여성, 장애인의 권리(장애인권리협약(2006)의 제정)에 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차별금지 대상으로 다수와 다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³⁾을 보유한 자, 즉 동성애자에 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인권회의에서 일부 거론되었을 뿐,⁴⁾ 비엔나선언 행동지침(Vienna Declaration Action Programme, VDAP)이나 당시 인권조약 어디에도 동성애, 성적지향이 명문으로 수용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VDAP에서 여성차별금지와 함께 수용되었던 ‘젠더폭력(gender violence)’의 개념을 통해 점차 국제인권의 논의, 특히 차별, 폭력 금지 논의의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1) 박흥순, 서창록, 박재영, 이신화 (이하 박흥순 외 3인), 국제기구와 인권, 난민, 이주: UN인권기구·UNHCR·IOM, 38-39면 (오름, 2015)

2) 박흥순 외 3인, 앞의 책, 38-39면.

3)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유전학상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발견된 바 없다. Sarah Knapton, Being homosexual is only partly due to gay gene, research finds, The Telegraph, Feb.13, 2014 (<http://www.telegraph.co.uk>) (노스웨스턴 대학의 마이클 베일리(Michael Bailey)박사가 400쌍 쌍둥이 연구를 통해 게이 남성들의 유전자 구성이 유사한 면이 있으나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1993년 게이 남성 X염색체 중 Xq28유전자가 남성 동성애 유전성이 있다는 결과(Dr.Hamer)는 후에 쌍둥이 연구에서 반박되었다. 베일리 박사는 그 유전자로 인해 남성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은 40% 정도만이며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다.

4) ISHR, Expert views on the Vienna Declaration & Programme of Action + 20, February 13, 2013. (<https://www.ishr.ch>에서 검색 가능) (2018.8.21. 마지막 검색) John Fisher의 의견을 참조하라

여기서 젠더폭력은,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sexual violence},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달리, 남녀의 생물학적 양성을 넘어선 사회적 성, 즉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간성애⁵⁾, 무성애⁶⁾ 등 다양한 성에 대한 차별,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990년 대 중반 이후 동성애^{sexual orientation}와 성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들의 권리 옹호가 국제인권기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⁷⁾ 1993년 CCPR은 오스트레일리아 타즈마니아 주 형법의 남성간 성행위 처벌 규정에 대해 시정하라고 최초로 결정하였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법과 관례, 폭력 행위 금지⁸⁾에 대한 결의는 2010년대에 UN 인권이사회^{HRC}에서도 세 차례 이루어졌다.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반대국가 수와 기권국가 수가 상당히 높고 최근 증가 추세이다. 한국은 찬성표를 던져 찬성국으로 분류된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고 있는 점, 국내법제와의 충돌에 대한 고려, 전통적 가족제도의 보호의 필요상 기권 또는 반대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해 본다.

5) Intersexual. 성기관의 기형적 분화로 남성과 여성의 성적 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예 난소와 고환조직을 모두 가진 경우 등)이다. 홍기욱, 성적소수자의 인권침해 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 방안, 충북대 법학박사논문, p.16-7, 2016.

6) Asexual. 동성 또는 이성에게 성적 끌림을 지속적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 홍기욱, 앞의 논문, p.16.

7) ISHR, Expert views on the Vienna Declaration & Programme of Action + 20, February 13, 2013. (<https://www.ishr.ch>에서 검색 가능) (2018.8.21. 마지막 검색) Charlotte Bunch, Eleanor Openshaw, John Fisher의 의견을 참조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결의와 찬반 국가수]

결의 연도	찬성 국가 수	반대 국가 수	기권 국가 수	총 참여국가 수
2011	23 / 중남미 국가	19 / 아시아 아프리카	3 / 중국 등	45
2014	25 / 중남미, 유럽국가	14	7 / 중국, 인도 등	46
2016	23 / 중남미, 유럽국가	18 / 중국 등 아시아 아프리카	18 / 인도, 필리핀 등	47

(3) 개발과 인권의 갈등

1990년대 이후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조력, 빈곤/기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국제적 문제를 포함하는 개발^{development}이 국제기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국제적 인권 분야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원조국들이 개발 지원의 수혜 요건으로 인권 개선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나타났다.⁸⁾ 소위 인권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 개념을 국제인권규범으로 만들어 정치, 경제, 문화가 다른 국가들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 예로 에이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던 우간다에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에 대해 미국이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우간다 대통령은 삭제를 거부하였다.⁹⁾

유엔내 동성애의 인권화 시도

(1)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와 그 기능

유엔의 인권 담당 기구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 OHCHR}가 있는데, 인권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UN인권최고대표^{HCHR}와 함께 생겨났다. UNHCHR(인권최고대표)는 기존 인권장치의 강화, 유엔 산하 인권신장 및 보호를 위한 활동의 조정, 감독, 회원국 접촉 외에 인권이사회의 총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UN총회^{General Assembly, GA}, 총회 산하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uncil, HRC}도 인권 관련 토론을 통해 결의,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결의, 권고는 국제조약(협약)과 같이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과 결의가 반복되어 축적될 경우 국제조약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학자들 중에는 국제법상 규범적 효력이 발생한 국제조약을 경성법^{hard law}로 보면서, 선언^{declaration}, 권고^{recommendatio},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으로 부르기도 한다.¹⁰⁾

한편, 조약감시기구로서 인권 관련 국제조약-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의 구체적 실행을 감독하기 위한 인권 규약감시기구^{treaty-monitoring bodies}가 기능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HRC) 또는 Committee of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C CPR))의 경우 규약회원국으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하는데 18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한다. 이 의견은 국가들에 시정, 권고 등 자발적 협력을 요청하는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내 동성애 옹호진영에서는 HRC^{C CPR}을 인권위원회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HRC^{C CPR}가 유엔의 인권담당 핵심기관이며, 이들의 의견이 UN의 의견이라고 호도하기도 한다.¹¹⁾ UN에서 2005년까지 기능하였던 UN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CHR))는 2006년 UN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되어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HRC^{C CPR}은 조약상의 기구로 조약의 이행을 관리하는 전문가단으로 보아야 하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CCPR로 칭해야 한다.¹²⁾

8) Maggie Black/추선영, 유엔, 강대국의 하수인인가, 인류애의 수호자인가?, 162-165면 (이후, 2012)

9) 그러나, 이 법은 헌법상 입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났다. Brandon Ambrosino, Uganda's anti-gay legislation, explained, Aug 4, 2014 (<https://www.vox.com>에서 검색 가능) (2018.8.21. 검색).

10) 심동섭, 유엔에서의 동성애 국제인권화 운동의 현황과 대응,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2017년 자료집, p.193-199.

11) 심동섭, 앞의 글, p.196-197.

12) 심동섭, 앞의 글, p.196.

(2) 동성애 진영의 인권규범화 시도

현재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에 성적지향,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한 표현이 명문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동성애 옹호진영에서는 동성애 운동 단체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문가들에 영향을 미치며 CCPR의 의견이나 유엔 소속 기관의 권고, 결의에 동성애 옹호를 언급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려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회원국 정부를 압박하며 연성법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¹³⁾ 이러한 연성법을 축척해 나가게 되면, 중도적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친동성애 진영과 연대하여 국제적으로 동성애 인권이 인정되었다며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혼 수용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국가의 국내법에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동성혼을 수용하여, 국제조약을 통한 동성애 차별 금지와 동성혼 수용을 지향하고 전략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13) 심동섭, 앞의 글, p.201-202

이상현 교수

이상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미국 골든게이트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송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